

● 구 고 시

제 18 호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변경시행허가(기간연장)고시(양천) ...	18
제 19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내용경정고시(관악)	18
제 23 호	도시계획사업(소매시장)변경시행허가(중랑)	20
제 28 호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실시계획변경인가(구로)	20

● 구 공 고

제 87 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구로)	21
제 89 호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실시계획공람공고(구로)	21
제 96 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마포)	25
제 119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중구)	25
제 145 호	도시계획안공람공고(동작)	28
제 222 호	도시계획안공람공고(서초)	28

● 정 정 계 재 28

● 사 령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226호

검사기관의지정기준및업무처리등에
관한고시중개정고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 및 동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22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지정기준 등에 관한 서울특별시고시 제251호(1986.4.18) 및 제538호(1989.12.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91. 7. 25

서울특별시장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삭제한다.

1.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대상업무

- 냉동기 검사
- 자체검사 및 안전점검(이하 "자체검사"라 한다)의 대행

2. 전문검사기관의 검사대상업무

- 가. 탱크재검사기관
 - 저장탱크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
- 자체검사의 대행

나. 용기재검사기관
최고충전압력 18.6kg/cm² 이하의 열피. 지를 충전하는 강제용접 용기로서 내용적 20ℓ 이상 125ℓ 미만의 용기재검사. 단, 자동차 연료용 계의
제13조제1항제2호 중 "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차량에 고정된 탱크, 용기"로 한다.

〈별표1〉을 〈별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1. 자본금

가. 공인검사기관: 3억원 이상(등기부상 자본금임)

나. 전문검사기관

(1) 탱크재검사기관: 5억원 이상(등기부상 자본금임) 다만, 법인이 비영리법인으로서 자본금등기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주무부장관(법인인가기관)이 승인한 정관에 당해 검사업무의 사업내용이 포함되고 대차대조표상에 검사목적의 적립금 및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이 있으면 이를 자본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용기재검사기관: 3억원 이상(등기부상 자본금임). 다만, 탱크재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이 용기재검사기관으로 추가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검사기관의 인력

가. 공인검사기관: 민법 또는 타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 전문검사기관: 기술 및 자부능력을 갖춘 법인

3. 검사장 부지

가. 공인검사기관: 해당 없음

나. 전문검사기관: 부지면적 2,250㎡ 이상
검사전용부지 확보. 다만, 충전업소에서 자기 소유의 용기만을 검사하기 위하여 용기 재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충전소부지 외에 별도로 검사장 부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여도 되나 충전소 내에서 소요되는 규모의 검사장을 확보

하여야 한다. 또한 증전업소가 타인소유의 용기를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증전소의 총부지는 3,375㎡ 이상으로서 증전장, 검사장 및 공용부지로 구분하여 검사장과 공용부지를 합한 면적이 2,250㎡ 이상이어야 한다.

4. 사무실

- 가. 공인검사기관: 100㎡ 이상 확보
- 나. 전문검사기관: 100㎡ 이상 확보

5. 검사장비 및 시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별표26에서 규정한 검사장비 이상 확보. 다만, 용기증전업소가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엘.피.지 용기를 재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동력자원부 가스 29233-1151호(88.2.24)에 의한 용기재검사기관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기술인력: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별표26에서 규정한 검사담당 기술인력 이상 확보

- 기술인력 자격제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중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는 자는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으로 채용될 수 없다.

7. 비파괴검사 기술용역계약 체결: 과학기술처의 전문기술용역업 등록을 필한 업소(비파괴검사 전문용역업) 2개소 이상과 전담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할 것

(별지 제1호서식) 조사표 순번 6번의 조사기준란 중 "2,268㎡(700평)"을 "2,250㎡"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고시제227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증 정정고시

1. 건설부고시 제693호(89.1.3)와 서울특별시고시 제67호(89.2.28)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되어 시보 제1570호(91.6.15)에 서울특별시고시 제178호로 기재된 중계2지구~원자력병원간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내용 중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 판계도서는 노원구청 토목과,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1. 7. 22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내용

구분	사업시행지	사업종류 및 사업명칭	사업의 규모	사업기간
오	공릉동~하계동	"도시계획사업(도로)" "중계2지구~원자력병원간 도로개설공사"	B=30m L=1,000m	인가일로부터 92.12.31까지
정	공릉동 184-1~ 하계동 산 32	갈 음	B=30m L=1,033m	갈 음

나.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장(노원구청장): 갈음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소유자 이외의 권리의 명

세: 별항(정정사항)
라.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이해관계인의 주소, 성명: 별항(정정사항)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명: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사업시행자 주소: 노원구 상계동 산 95-1
 사업의 종류: 중계2지구~원자력병원간도로개설공사

(경정사항)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종류 및 내용	
오	공릉동 172-17	학	14,840	14,840		(국)	문교부	서울산업 대 학교	공릉동 172		
정	공릉동 172-18	학	14,840	14,840		(국)	문교부	서울산업 대 학교	공릉동 172		
오	하계동 78-9	학	679	679		(국)	문교부	서울산업 대 학교	공릉동 172		
정	하계동 78-11	학	679	679		(국)	문교부	서울산업 대 학교	공릉동 172		
오	하계동 산34-7	임	598	598		선원석산(합 박두환	목포시 사산동 2 도봉구 수유동 172-29				산34-1 에서분할
						문복순 추진수	중구 황학동 376 광주시 동구 궁동 51-5				"
						김종섭 심재경	중포구 채부동 74 하계동 70				"
						박주섭 이일수	하계동 69 경기이천집성행죽113-2				"
						심보영 노길일	하계동 69 하계동 69	김기열	강남구 방배동 725 방배삼호 A) B 1203	근저당성정	"
						송명복 손동오	하계동 산34-1 강남구 반포동 235 신반포2지구(노)		107-102		"
						장정자 최성순	은평구 불광1동 산54 미성(A) 7-1310 양천구 신정동 330 북동천서가지(A) 1414 78				"

제 1581 호

시

분

1991. 7. 23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권입 면적 (㎡)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오	하계동 산34-7	임	598	598		박종구 최종만	부산시 동래구 연산4동 588-1 새연산(A) A-607 전북 전주시 서완산동1가 466			산34-1 에서분할	
						장철자	양천구 신정동 330 목동신시가지(A) 1414-708			"	
정	하계동 산34-7	임	598	598		석일석산(하) 박두환	목포시 시산동 2 도봉구 수유동 172-39			"	
						문복순	성동구 사근동 149-60	김기열	강남구 방배동 725 방배삼호 (A) B-1203	가동기-	"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말소예 고등기	"
						추진수 김종섭	광주시 동구 광동 51-5 종로구 채부동 74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말소예 고등기	"
						심계경 박주섭	노원구 하계동 70 노원구 하계동 69				"
						이일수 심보영	경기도 이천군 설성행죽리 113-2 노원구 하계동 69				"
						노권열 송명복	노원구 하계동 69 노원구 하계동 산34-1				"
						손동호 장겨자	강남구 반포동 235 신반포2지구(A) 107-102 은평구 불광1동 산54 미성(A) 7-1310				"
						최경순 박종구	양천구 신정동 330 목동신시가지(A) 1414-708 동대구 은천1동 65-2 스타맨선BEHD 1203				"
						최종만 장철자	전주시 서완산동1가 466 양천구 신정동 330 목동신시가지(A) 1414-708				"

물 건 조 서

사업의 종류: 중계2지구~원자력병원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시행지명: 서울특별시(노원구청장)
 사업시행자주소: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산95-1

(정정사항)

구분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 격	수량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오	하계동 78-9	수목	-	1식	수목	(국)	문교부	서울산업 대 학교	공통동 172	
정	하계동 78-11	수목	-	1식	수목	(국)	문교부	서울산업 대 학교	공통동 172	
오	공릉동 172-17	온실	비 닐 하우스	45	온실	(국)	문교부	서울산업 대 학교	공통동 172	
정	공릉동 172-18	온실	비 닐 하우스	45	온실	(국)	문교부	서울산업 대 학교	공통동 172	
오	공릉동 172-17	펜스	P.V.C 농행망펜스	263m	펜스	한 국 전력공사	강남구 대치동 16-1	서울산업 대 학교	공통동 172	
정	공릉동 172-18	펜스	P.V.C 농행망펜스	263m	펜스	한 국 전력공사	강남구 대치동 16-1	서울산업 대 학교	공통동 172	
오	공릉동 172-17	수목	-	1식	수목	(국)	문교부	서울산업 대 학교	공통동 172	
정	공릉동 172-18	수목	-	1식	수목	(국)	문교부	서울산업 대 학교	공통동 172	
오	하계동 산34-8	묘	-	2기	묘지	이준원 이종은	구리시 남양연립(A) A-207 공릉동 517-80			
정	하계동 산34-8	묘	-	2기	묘지	이준원	미암시 도농3동 321-17 남양연립 A-207			
			-	1기	묘지	이종은	노원구 공릉동 517-80			

<p>●서울특별시고시제228호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수립 1. 건설부고시 제340호(90.6.8)로 지구지정되고 같은 고시 제355호(91.7.3)로 지구추기 지정된 흑석3동 1번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였기 같은</p>		<p>법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발과와 관할구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1. 7. 22 서울특별시장</p>		
<p>가. 개선계획 수립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p>				
지 구 명	위 치	면적(㎡)	비 고	
흑석3동 1	동작구 흑석동 산 70-8 일대	18,358	공동주택건설	
<p>나. 사업시행기간:1991.7.15~93.12.31 다. 사업의 시행자: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라.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내용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경비계획, 건축물의 계량 및 도시계획사항의 변경, 결정에 관한 내용 등 생략(서울특별시청 주택개발과와 동작구청 주택과에 비치된 서류 및 도면과 같음)</p>		<p>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였기 동법 제9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1. 7. 23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칭:서울월계4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김한중 나.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54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p>		
<p>●서울특별시고시제229호 서울월계4지구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서울 월계4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 및 동법</p>				
<p>나. 토지이용계획(변경)</p>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계	149,628	148,488	100	
○ 주택건설용지	109,356	107,536	72.4	공동주택
○ 공동주택용지	40,272	40,952	27.6	어린이공원(3) 면적증가
도 로	11,287	11,287	7.6	
공 원	9,640	10,320	7.0	
녹 지	5,150	5,150	3.5	
화 교	11,000	11,000	7.4	
공 용 의 청 사	1,875	1,875	1.2	
종 료 용 지	1,320	1,320	0.9	

<p>다. 주택건립계획:4,300호, 17,200인 수용</p> <p>4. 사업시행기간(변경 없음): 1990.5.31~1993.12.31</p> <p>5.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600 일원 나. 면적:기정-149,628㎡ 변경-148,488㎡</p> <p>6.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 송달방법:서류의 송달은 통상적 방법에 의하여 행하되 그것이 불가능할시는 택지개발촉진법시행</p>	<p>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함.</p> <p>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서(변경분):별첨</p> <p>8.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조서 및 도면:별첨</p> <p>9.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과:731-6352) 및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사(567-756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개합니다(관계도면 개제 생략).</p>
---	--

원계4지구 토지세목 변경조서

소재지	구분	지 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관리구분	주소
노원구 월계동	기정	287-1	도로	5,121	30		서울시		
	변경	287-12	"	20	20		"		
	기정	-	-	-	-		서울시		
	변경	620-6	도로	2	2		"		
	기정	626-8	도로	1,542	1,289		서울시 노원구		
	변경	626-9	"	406	406		"		
		-11	"	871	871		"		
	기정	-	-	-	-				
	변경	559-4	대	73	73	성북구 장위동 79 성북구 상월곡동 55-46	김보연 송선주		
	기정	-	-	-	-				
	변경	559-6	대	26	26	종로구 혜화동 6-86	이점순		
	기정	806-7	담	891	50	노원구 월계동 820	학교법인 열광학원		
	변경	-14	"	32	32	"	"		
	기정	806-9	담	564	15	"	"		
	변경	-15	"	8	8	"	"		
기정	-	-	-	-		서울시			
변경	809-11	도로	1	1		"			
기정	815	전	93	20	노원구 월계동 447-2	명경희			
변경	-2	"	40	40	"	"			

소재지	구분	지 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공부상	면적	주 소	성 명	관리구분	주소
노원구 월계동	기정	815-1	도로	2,887	340		서울시		
	변경	-3	"	22	22		"		
		-4	"	542	542		"		
		-6	"	99	99		"		
	기정	829-1	구거	3,577	1,900		서울시 노원구		
	변경	-4	"	1,707	1,707		"		
	기정	850-1	도로	3,085	3,085		서울시		
	변경	-4	"	2,041	2,041		"		
	기정	853-6	담	52	12		서울시		
	변경	-15	"	8	8		"		
	기정	547-24	대	291	291	종로구 명륜동1 가 7-29	안대룡		
	변경	-24	"	33	33	"	"		
기정	547-54	대	39	39	"	"			
변경			삭	제					
계	기정	287-1의 10필		7,071					
	변경	287-1의 16필		5,931					

월계4지구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변경) 결정조서

1. 용도지역(변경)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708,387,000	-	708,387,000	100	
주거 지역	소 계	302,981,360.4	-1,140	302,980,220.4	42.7
	전용주거지역	5,001,159	-	5,001,159	0.7
	일반주거지역	294,133,647.9	-1,140	294,132,507.9	41.5
	준주거지역	3,846,553.5	-	3,846,553.5	0.5
상 업 지 역	소 계	21,639,243	-	21,639,243	3.1
	전용공업지역	29,084,183	-	29,084,183	4.1
	공업지역	-	-	-	-
	준공업지역	29,084,183	-	29,084,183	4.1
녹지 지역	소 계	354,682,213.6	+1,140	354,683,353.6	50.1
	생산녹지지역	4,625,330	-	4,625,330	0.7
	자연녹지지역	350,056,883.6	+1,140	350,058,023.6	49.4

* 기정은 서울시고시 제206호(91.7.1)의 결정 면적임.

* 용도지역 변경면적은 지적확정 측량에 의한 증감분으로 지구정제는 변경 없음.

2. 공원결정 조사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공 원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어 1	어 린 이 공 원	월계동 산 98-1	4,500	4,500	
"	어 2	"	월계동 840-4	2,000	2,000	
변 경	어 3	"	월계동 580-1	3,140	3,820	

3. 어린이공원(1) 조성계획						
○ 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시 설 내 용	시 설 면 적 (㎡)		비 고		
		부 지	진 측			
합 계		4,500				
도로및광장		1,018				
조경시설	그늘시령	-	3개소			
휴양시설	의자	-	19개소			
유희시설	사장	324				
운동시설	운동공간	350				
편익시설	공중변소	12	1개소			
	음수대	-	1개소			
관리시설	휴지통	-	2개소			
	가토동	-	4개소			
누 지		2,796				

○ 시설조사								
구 분	시 설 명	명 칭	위 치	부지면적 (㎡)	규 모	시설규모 (㎡)	구조	비고
합 계				1,704				
도로및광장	도로광장	계		252				
		1		766				
		2		190.5				
		3		234				
				341.5				
조경시설	그늘시령	원두막	광장			1개소		
		파고라	"			2개소		
		의자	"			19개소		
		동평의자	"			2개소		
		원형의자	"			12개소		
		파강석의자	"			2개소		
유희시설	사장			324		3개소		

구 분	시설명	명 칭	위 치	부지면적 (㎡)	규 모	시설규모 (㎡)	구조	비고	
유회시설		조합놀이대	정글 짐		1개소				
운동시설	운동공간	정	소	350	"				
편익시설	공중변소			12	1개소	바닥면적 : 12	조적	건축분	
편리시설	유수대				1개소				
	휴지통				2개소				
	가로				4개소				
○ 도로조서									
등급	종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시점	종점	비고
소로		1	2	13	26	연결로	도로	1-1광장	
		2	2	6	12	"	1-1광장	1-2광장	
		3	2.5	48	120	"	1-2광장	1-3광장	
		4	2	47	94	"	1-2광장	1-3광장	
4. 어린이공원(2) 조성계획									
○ 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시설내용	시설면적 (㎡)		비고					
		부지	건축						
합계		2,000							
도로및광장		354							
조경시설	그늘시령	-	1개소						
휴양시설	의자장	-	6개소						
유회시설	사	225							
운동시설	운동공간	396							
편익시설	공중변소	12	1개소						
	유수대	-	1개소						
관리시설	휴지통	-	3개소						
	가로	-	3개소						
녹지		1,013							
○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명 칭	위 치	부지면적 (㎡)	규 모	시설규모 (㎡)	구조	비고	
합계				987					
도로및광장	도로광장	계		106					
			1	248					
			2	123					
				125					

구 분	시 설 명	명 칭	위 치	부지면적 (㎡)	규 모	시 설 규 모 (㎡)	구 조	비 고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그늘시령 의자 사장	파고라 계자 평의자 동의자 조합놀이대 정글짐 유아용그네	광장	225	1개소 6개소 4개소 2개소 1개소 · ·				
운동시설 편의시설 관리시설	운동공간 공중변소 음수대 휴지통 가로등			396 12	1개소 1개소 3개소 3개소	바닥면적 : 12	조적	건축분	
○ 도로조서									
등 급	종 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시 점	종 점	비 고
소 로		1-1	5	8	40	진 입	도로	2-1광장	
		1-2	4.5	14	63	연 결로	2-1광장	2-2광장	
		1-3	1.5	2	3	·	1-1소로	공중변소	
5. 어린이공원(3) 조성계획 ○ 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시 설 내 용	시 설 면 적(㎡)		비 고					
		부 지	건 축						
합 계		3,820							
도 로 및 광 장	소 계	978							
	도 로	421.5							
	광 장	556.5							
조 경 시 설	그늘시령	-	2개소						
휴 양 시 설	의자	-	14개소						
유희 시 설	사장	360							
운 동 시 설	운동공간	772							
편 의 시 설	공중변소	40	1개소	건축시공 (관리소 포함)					
	음수대	-	1개소						
	휴지통	-	4개소						
관 리 시 설	가로등	-	3개소						
녹 지		1,670							

○ 시설조사									
구 분	시 설 명	명 칭	위 치	부지면적 (㎡)	규 모	시설규모 (㎡)	구조	비고	
합 계				3,820					
도 로 및 광	도 로 및 광	도 로 및 광	장	421.5 556.5 187 153 216.5					
조경시설	그늘시설	파원계동평	고대평	360					
휴양시설	의자장	의자장	의자장						
유외시설	사	장	조합놀이대 (미끄럼대, 그네, 래디)						
운동시설	운동공간		정갈집						
편의시설	공중전화기	소대통	철봉	772					
관리시설	유지료	가동	봉구대	40					
녹지				1,670				바닥면적 : 38	조적 건축분
○ 도로조사									
등 급	종 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시 점	종 점	비 고
소 로		1-1	3~6.5	32	218.5	주 진입도로	서측단지내	2-1광장	
		1-2	3	6	18			2-1광장	
		1-3	3~4	17	55	연결도로	2-1광장	2-2광장	
		1-4	2	4	8	진입도로	2-1광장	운동장	
		1-5	3	5	15	복측진입도로	복측단지내	2-3광장	
		1-6	2	4	8	동측진입도로	동측단지내	2-3광장	
		1-7	2~4	4	99	동측진입도로	동측단지내	2-3광장	

●서울특별시고시제230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및
변경허가

- 1. 우리 시 관내 광운대학교 및 경희대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하고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경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1. 7. 25

서울특별시장

○ 광운대학교

- 가. 사업시행지: 노원구 월계동 447-1 일대
-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학교)
- 다. 사업의 명칭: 광운대학교 시설 증축
- 라. 사업시행규모

1) 사업시행면적: 53,671㎡(도시계획 결정 면적)

2) 사업내역

- 가) 기존 -동수: 6동
- 연면적: 41,989㎡

나) 금회허가내역

- 학생극장 신축(지하2, 지상4층)
- 연면적: 14,728.67㎡
- 전자계산교육원 신축(지하2, 지상10층)
- 연면적: 7,690.01㎡

다) 누계 -동수: 8동
-연면적 64,407.68㎡

마. 사업시행자

주소: 노원구 월계동 447-1
성명: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장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1) 착수연월일: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 2) 준공예정일: 94.12.31

사. 위치도 및 평면계획도: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및 노원구청 도시경비과 비

치도면과 같음.

- 아. 토지소유자: 학교법인 광운학원(수용할 토지 없음)

○ 경희대학교

가. 사업시행지: 동대문구 이문동 1-3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학교)

다. 사업의 명칭: 경희대학교 시설 증축

라. 사업시행규모

1) 사업시행면적: 405,901㎡(도시계획 결정 면적)

2) 사업내역

- 가) 기존 -동수: 34동
- 연면적: 212,591.62㎡

나) 금회허가 및 변경허가내역

- 기숙사 신축공사 변경(지하실 부분)

-연면적 5,518.63㎡→5,763.19㎡
증, 244.56㎡

- 시청각교육실 증축공사 변경
- 연면적: 3,663.74㎡→2,965.34㎡
감, 698.40㎡

-준공기한 연기

┌ 당초: 91.12.31

└ 변경: 92.12.31

- 정경대학관 및 문리대학관 증축공사 변경

-준공기한 연기

┌ 당초: 91.12.31

└ 변경: 92.12.31

- 경희의료원 부속실 및 열교환실 증축공사 변경

-연면적: 756㎡→216㎡
감, 540㎡

- 부속병원 증축(지하1층)

-연면적: 640.6㎡

-착수연월일: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준공예정일: 92.12.31

다) 누계 -동수 35동

- 연면적 212,238.39㎡

마. 사업시행자

주소: 동대문구 회기동 1

성명: 학교법인 고허재단 이사장

바. 위치도 및 평면계획도: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및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 비치도면과 같음

사. 토지소유자: 학교법인 고허재단(수용할 토지 없음)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220호

1991년도 하반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시행계획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1. 7 25

서울특별시 장

1. 명예퇴직대상

2급 이하 일반직, 지방소방정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으로서 명예퇴직신청개시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 10년 이내인 자
· 5급 이상(31.7.1~40.6.30 출생자)
· 6급 이하(34.7.1~43.6.30 출생자)

2. 명예퇴직신청

가. 신청기간: 91.8.14~18(5일간)
나. 신청절차: 명예퇴직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소정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후 시장(자치구는 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3. 명예퇴직 대상자의 심사절정 및 통지

서울특별시장은 명예퇴직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4. 명예퇴직예정일: 91.8.30

5. 명예퇴직대상자의 사직원 제출

명예퇴직의 결정통지를 받은 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6. 명예퇴직우대

· 수당지급: 퇴직일로부터 5월 이내 지급
· 수당 계산방식

가. 1년 이상 5년 이내

-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x 정년잔여월수

나. 5년 초과 10년 이내

-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x 정년잔여월수 - 60월 / 2

· 특별승진 및 표창: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제1항제4호(단, 승진임용제한을 받는 자 제외)

7. 본인의 의사에 반한 신청의 배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 추천하여서는 아니된다.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서울특별시공고제221호

K·S표시정지처분

공업표준화법 제21조제1항에 의거 표시정지 처분하고, 동법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1. 7. 24

서울특별시 장

1. 업체명: 안암기업 주식회사

2. 대표자: 신한규

3. 소재지: 서울 구로구 시흥3동 980-2

4. 규격번호: KSF2560

5. 규격명: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6. 종류등급: 나프탈린계, 감수제

7. 처분사유: 조기강도 미달(3,7일)

8. 처분기간: 91.7(표시정지 3개월간)

●서울특별시공고제223호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업무개선
시행에관한공고

개인택시의 불법 양도·양수 예방으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양도·양수 인가 업무를 아래와 같이 개선하였기 시행공고 합니다.

1991. 7. 25

서울특별시

1. 개선방안 : 양수자의 자격에 관한 사전 심사 실시(거주지 관할구청장) 후 양도·양수 인가(자동차관리사업소장) 처리
2. 내용 : 개인택시를 양수하고자 할 경우 양수자는 사전에 관할구청장에게 양수자로서 자격에 관한 심사신청서를 제출하고, 관할구청장은 지체없이 심사를 실시하여 심사 결과를 민원인과 자동차관리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자동차관리사업소장은 양수자로서 자격이 적격인 경우에만 양도·양수인가 처리
3. 방법
(민원인).....양수 희망자

4. 양도·양수 자격 요건

구분	법 적 요 건	구 비 서 류
양도자	<p>〈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3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 후 5년 경과자 ○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 • 해외이민 또는 해외취업 • 61세 이상 자로서 본인이 직접 운전 불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감증명서(용도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용) ○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증(원본) ○ 해외취업 확인서 또는 이주허가서 ○ 진단서(국·공립병원장 발행) ※ 사실여부를 해당부서에 조회 확인 후 처리
양수자	<p>〈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인가)의 기본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용 : 신청일로부터 가산하여 최근 4년에 3년 무사고 • 비사업용 : 신청일로부터 가산하여 최근 7년에 6년 무사고(고용경력에 한함) 	<p>(양수자로서 자격심사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 등본 ○ 운전면허증(사본) ○ 병적확인서(주민등록 등본)....40세 이하자 ○ 운전경력증명서(인감 등 관계 증명서류)

- 양수자로서 자격(적격여부)을 관할구청장에게 사전 심사토록 신청하여 심사결과 적격자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매매로 인한 양도·양수인가 신청을 할 수 있고, 양도·양수인가 신청 시에는 반드시 양수자 자격 심사결과 통보서(적격자)를 첨부하여야 함.
- 양도자는 종전과 동일
(거주지 관할구청장)
- 양수희망자(민원인)가 개인택시 양도·양수를 위하여 사전에 자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개별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결과를 민원인과 자동차관리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자동차관리사업소장)
- 양도·양수인가 신청 접수시에는 민원인이 제출한 양수자 자격에 관한 사전심사 결과 통보서와 관할구청장이 심사결과 통보한 내용의 일치여부를 확인 후 처리
- 기타 사항은 종전과 동일

구분	법 적 요 건	구 비 서 류
양 수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사업용: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최근 7년에 3년 무사고(비사업용은 고용경력에 한하며 1/2로 환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서 ○신원증명서 (인가서) ○인감증명서 (용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양수용) ○양도증명서(관인매매계약서) 사본 ○경력심사결과 통보서(적격자에 한함) ○건강진단서(국·공립병원장 발행) ○건강진단서(국·공립병원장 발행) ○주민등록 초본
<p>(기타 인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에 의한 결정 사유가 없는 자 · 서울시내에 3년 이상 거주자로서 서울시내 운전 경력 3년 이상인 자 · 모든 진단서는 국·공립 병원장 발행에 한함(허위 또는 대리진단사례 색출) ·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개인택시 면허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처리 <p>5. 시행일자: 91.8.10</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 <p>구 고 시</p> </div> <p>●양천구고시제18호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 변경시행허가(기간연장)고시</p> <p>1. 양천구고시 제7호(89.4.21)로 시행허가하고 양천구고시 제15호(90.7.5) 양천구고시 제2호(91.1.7)로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변경시행허가한 양천구 신월동 338번지 일대의 중부운수(주)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시행 허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p> <p>2. 판계도서는 양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1. 7. 19</p> <p style="text-align: right;">양 천 구 청 장</p> <p>가. 사업시행지: 양천구 신월동 338번지 일대(변경 없음)</p> <p>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변경 없음)</p> <p>명칭: 중부운수(주)(변경 없음)</p> <p>다. 사업시행자주소: 양천구 신월동 338 (변경 없음)</p> <p>명칭: 중부운수(주) 대표이사 정세하 (변경 없음)</p> <p>라. 사업의 규모: 대지 1,580m(변경 없음) 건축연면적 1,473.3m</p> <p>마. 사업시행기간: 당초-1989.4.21~1991.7.30 변경-1989.4.21~1991.12.31</p> <p>바. 토지조서: 생략(변경 없음)</p> <p>사. 설계도서: 생략(변경 없음)</p> <p>●관악구고시제19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내용정정고시</p> <p>관보 제1566호(91.5.25)의 (서울)관악구고시 제12호로 제정된 신림3동 635~633간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실시계획 인가내용 중 토지 및 물건조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1.7.25</p> <p style="text-align: right;">관 약 구 청 장</p>

• 토지조서							
구분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성명 및 주소	이해관계인 성명 및 주소	
오	신림동 624-30	도	14	14	김용희 : 영등포구 여의도동 1-45(시법㉔ 21-25)		
	신림동 624-43	대	1	1	박옥예 : 성북구 미아동 1125-8 조영규 : 동대문구 전농4동 7-14 홍성숙 : 종로구 가회동 7-14	관악구청장 : 봉천동 1570-1(압류)	
정	신림동 624-30	도	46	46	김용희 : 영등포구 여의도동 1-45(시법㉔ 21-25)		
	신림동 624-43	대	1	1	박옥화 : 성북구 미아동 1125-8 채영규 : 동대문구 전농4동 371-22 홍성숙 : 종로구 가회동 11-14	관악구청장 : 봉천동 1570-1(압류)	
• 물건조서(지장물 기타)							
구분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성명 및 주소	이해관계인 주소 및 성명
오	630-30	대문 담장		1개 1식		조용태 : 신림동 630-7 조영규 : 강남구 삼성동 168-447 최한영 : 신림동 675-212 최찬일 : 신림동 630-7 배복현 : 신림동 630-7	
정	630-30	대문 담장		1개 1식		조용태 : 신림동 630-7 채영규 : 강남구 삼성동 168-447 최한수 : 신림동 675-212 김찬일 : 신림동 630-7 표복현 : 신림동 630-7	

●중랑구고시제23호

도시계획사업(소매시장)변경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중랑구고시 제9호(89.2.4) 도시계획사업(소매시장) 시행허가되고 중랑구고시 제101호(89.11.30) 도시계획사업변경 시행허가되고 중랑구고시 제10호(91.3.29) 도시계획사업 변경시행허가된, 관내 중화동 307번지 1호 중화제일시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권한위임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소매시장) 변경시행허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991. 7. 19

중랑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307번지 1호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사업(소매시장)변경시행

○ 명칭: 중화제일시장

다. 사업시행자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307-1

성명: 창화실업(주) 대표 옥영의

라. 사업규모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지하2층, 지상5층)

○ 사업시행면적: 3,300㎡.

○ 건축면적: 1,531.89㎡

○ 건축연면적: 12,315.15㎡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 89. 3. 1(착공)~91. 7. 30(준공)

○ 변경: 89. 3. 1(착공)~91. 11. 30(준공)

바. 기타사항: 변경 없음

●구로구고시제28호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69...18)로 시설결정 및 지적 승인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고시 제69호(90.10.5)로 실시계획인가된 사항에 대해
2. 서울특별시고시 제354호(90.10.24)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고시 제27호(91.7.1)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재고시한 도시계획사업(도로 및 하수도)으로,
3.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였기에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권한위임규정이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4.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건설관리과 및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1. 7. 25

구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2동 390 일대(변동 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구로2동 390의 10~390의 194칸 도로개설공사(변동 없음)

다. 사업규모: 도로 B=6m, L=180m
하수도(D=600φ), L=180m(변동 없음)

라.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변동 없음)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 90. 5. 2~90. 12. 31

○ 변경: 90. 5. 2~91.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별첨 토지 및 물건조서

사.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인 주소, 성명: 별첨 토지 및 물건조서(변동 없음)

구 공 고

●구로구공고제87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

건설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의 양도를 인가하였기에 등 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1. 7. .
구로구청장

인가일자	양도업종및 면허번호	양 도 자			양 수 자		
		상 호	소 재 지	대표자	상 호	소 재 지	대표자
91. 7. 16	설비공업서 울 85-12-43	(주) 경 보기공	구로동 609-1	이호심	부영기 공(주)	성북·보문동 7가 118번지	유형식

●구로구공고제89호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 실시
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393호(78.12.7)로 시설결정 및 실효고시하고 서코 116호(85.3.23)로 지적 승인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하수도)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1991. 7. 25
구로구청장

다 음

-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344번지 일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신도림동 344

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규모: 도로포장 B=40m,
L=850m
하수도(D=600%),
L=850m(변동 없음)

라.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청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인가일~
92.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별첨 토지
조서

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인 주소,성명: 별첨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첨부 토지조서 2부

일련 번호	소재지번	지 목	지 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신도림동329-14	대지	11	신도림 365	한국타이어 주식회사		
2	" 329-3	"	58	"	"		
3	" 329-8	잡	13	중구 을지로1가 50	제일계당 (주)		
4	" 329-30	"	112	신도림동 329-7	조 정 래		
5	" 329-29	대지	93	" 329	손 근 성		
6	" 329-9	잡	36	" 329-9	반 용 석		
7	" 329-27	"	115	강남개포지구 107 블럭 17호	면 영 회		

일련 번호	소재지번	지 부	지 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8	신도림동 330-30	대지	26	신도림동 330-30	정 종 설			
9	" 330-31	"	26	" 330-31	이 진 우			
10	" 330-26	"	89	" 330-26	양 옥 배			
11	" 330-24	"	33	" 330	유 재 식			
12	" 330-23	"	96	" 330	김 영 호			
13	" 330-20	"	60	" 330-20	서 영 진			
14	" 330-3	"	40	" 330-3	이 기 묘			
15	" 330-10	대지 62/122		양천구 목동 904 목동신가지(4) 416-201	정 경 용			
			"	13/122	신도림동 330-10	김 영 찬		
			"	24/122	" 330-58	윤 정 순		
			"	23/122	" 330-58	임 정 옥		
16	" 330-58	대지 62/122		양천구 목동 904 목동신가지(4) 416-201	정 경 용			
			"	13/122	신도림동 330-58	김 용 구		
			"	24/122	"	윤 정 순		
			"	23/122	"	윤 정 순		
17	" 330-12	대지	60	신도림동 331-3	(주)별동공업			
18	" 344-44	"	1	" 330	이 중 수			
19	" 344-4	대지	46	신도림동 330	박 필 원			
20	" 344-11	"	35	" 330	이 중 수			
21	" 344-45	"	13	" 330-12	백 영 숙 의			
22	" 344-12	"	40	"	"			
23	" 344-5	"	66	미포구 망원동 424-1	신 영 식			
24	" 344-46	"	12	신도림 330	박 대 선			
25	" 344-13	"	24	"	"			
26	" 330-26	"	18	"	추 옥 출 의			
27	" 344-49	"	28	"	"			
28	" 344-16	"	67	신도림동 330	"			
29	" 344-17	"	13	"	오 예			
30	" 344-50	"	11	"	"			
31	" 344-15	"	29	신도림동 344-15	박 연 애			
32	" 344-48	"	21	"	"			

일련 번호	소재지번	지목	지 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33	329-28	잡	98	신도림동 329-5	김 강 현		
34	330-13	대	126	양천구 목동 904 북동신시가지④ 416-201	정 경 용		
35	330-21	"	112	신도림동 330-21	조 덕 예		
36	330-22	"	96	" 330-22	남 상 예		
37	신도림동 330-25	대지	26	신도림동 330	정 윤 예		
38	330-27	"	66	" 330-27	송 일 심		
39	330-28	"	30	" 330-28	맹 용 섭		
40	330-29	"	66	" 330-29	윤 상 호		
41	330-90	"	82	" 330-32	문 영 길		
42	328-28	잡	171	성북구 보문동5가 159-1	김 자 오		
43	328-41	"	234	"	"		
44	328-42	"	101	전북 순창 순창 순화 277	이 태 주		
45	330-91	대지	19	신도림동 330-33	변 복 녀		
46	330-92	"	1	개봉동 64-3	지 춘 근	신도림동 293-166	김 동 식
47	331-6	"	33	신도림동 330	범 동 공업		
48	331-25	"	178	"	"		
49	344-18	"	76	마포구 망원동 424-1	신 영 식		
50	344-6	"	129	신도림동 344-6	이 순 구		
51	330-97	"	65	노랑진동 산56-1	서 현 자		
52	330-96	"	24	종로 동의 103-68	김 민 재		
53	330-95	"	10	신도림동 330-49	장 복 남		
54	330-94	"	4	" 330	남 영 원		
55	330-93	"	4	" 330-44	최 부 현		
56	330-19	전	36	" 330	김 우 준		

인 번	동 명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규격)	면 적 (수량)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	신도림동	331-69	주 택		49	양천구 목동 904 신시가지④ 416-201	정 경 용
2	"	330-13	창 교		90	"	"
3	"	330-58	작 업 장		127	"	"

인 번	동 명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규격)	면 적 (수량)	소 유 자	
						주 소	성 명
4	신도림동	330-58	주 택		59	신도림동 330-58	김 용 구
5	"	"	주택및점포		91	" 330	임 정 욱
	"	"	대 문		1식	"	"
6	"	330-21	주 택		52	신도림동 330-21	조 덕 예
	"	"	주 택		29	"	"
	"	"	대 문		1식	"	"
7	"	330-12	주 택		65	신도림동 330-22	남 상 예
	"	"	포도나무		1주	"	"
8	"	330-25	주 택		22	신도림동 330-25	정 윤 예
	"	"	대 문		1식	"	"
9	"	330-27	주 택		45	신도림동 330-27	송 원 섭
	"	"	대 문		1식	"	"
10	"	330-28	주 택		21	신도림동 330-28	맹 용 섭
	"	"	대 문		1식	"	"
	"	"	담 장		5m	"	"
	"	"	은행나무		1주	"	"
11	"	330-29	주 택		35.69	신도림동 330-29	윤 상 호
	"	"	대 문		1식	"	"
	"	"	담 장		7m	"	"
12	"	330-30	주택및점포		26㎡	신도림동 330-20	정 종 섭
13	"	330-31	주 택		21	" 330-31	이 진 우
14	"	344-6	"		75	신도림동 344-6	이 순 구
	"	"	"		10	"	"
15	"	331-3	수 위 실		5	신도림동 331	범 동 공 업
	"	"	담 장		10m	"	"
16	"	330-51	주 택		26	종로구 돈의동 103-68	김 민 제

인 번	동 명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규격)	면 적 (수량) (㎡)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6	신도림동	330-51	대 문		1식	종로구 돈의동 103-68	김민재
	"	"	담 장		6㎡	"	"
17	"	330-49	주 택		11㎡	신도림동 330-49	장복남
	"	"	대 문		1식	"	"
18	"	330-48	주 택		2㎡	신도림동 330	남영원
	"	"	대 문		1식	"	"
19	"	330-44	대 문		1식	신도림동 330-44	최부현
	"	"	담 장		7㎡	"	"

●마포구공고제96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

건설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의 양도를 인가

하였기에 동 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규
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1. 7. 18

마 포 구 청 장

인가일자	양도업종 및 면허번호	양 도 자			양 수 자		
		상 호	소 재 지	대표자	상 호	소 재 지	대표자
91. 7	조정시설물 설치공사업 (대구19-6)	(주) 시티파크	서교 354-22	강영구	자산조정 개발	서교 476-53	이대원

●중구공고제119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시행인가를

위한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05호(83.2.24)로 도
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23호(83.3.3)로 지적승인된 중구 황학
동 1725번지에서 황학동 1560번지간 도로
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 시행인가를
위한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
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

람공고합니다.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서를 공람공고기간
내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1. 7. 20

공 랑 요 지		증 구 청 장		요 : 폭-4m, 연장-131m	
가. 사업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다.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증구청장	
나. 사업개요				라. 수용할 토지(건물)조서	
○ 사업의 명칭 : 황학동 1685~1560번지				○ 도면 : 생략	
간 소방도로개설공사				○ 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 수용면적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황학동 1556-1	대지	2	상왕십리 607-1	하영순외1	
1557-1	"	6	황학동 1557	박 효 창	
1559-1	"	6	황학동 1559	김 기 동	
1560-1	"	3	황학동 1560	소 재 철	
1560-2	"	3	"	"	
1561-1	"	14	상왕십리동 610	이 광 우	
1562-1	"	9	"	"	
1562-2	"	1	"	"	
1634-1	"	1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516-6	신 유 순	
1635-1	"	12	황학동 1635	유영석외3	
1636-1	"	11	황학동 1636	김 행 의	
1645-1	"	21	황학동 2278 20/407	이 무 부	
1646-1	"	9	잠실동 27 505/409	변중남외7	
1648-1	"	3	관악구 봉천동 1677-19	이기수외3	
1648-2	"	1	"	"	
1648-3	"	66	"	"	
1649-1	"	10	황학동 1849	송 회 자	
1650-1	"	14	강남구 청담동 20-2	임 규 영	
1652-1	"	2	상왕십리동 663-2	고 도 태	
1652-2	"	1	"	"	
1654-1	"	2	황학동 1649	김 회 자	
1655-1	"	9	황학동 1655	이 강 만	
1728-1	"	6	황학동 1177	제 행 순	

○ 건물조사							
소재지 지번	구조및 규격	용도	수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황학동 1556-1	철재	대문	1식	황학동 1556	김준성의1		
"	1.5㎡	화장실	"	"	"		
1557-1	블럭	담장	2×4m	1557	박효창		
"	목조	대문	1식	"	"		
"	세면블럭	화장실	"	"	"		
1559-1	슬라브	장독대	1.5	"	"		
"	블럭	담장	2.5×7m	1559	김기동		
"	철재	대문	1식	"	"		
1560-1	슬라브	장독대	"	"	"		
"	2×4m	담장	"	1560	소재철		
"	철재	대문	1.5	"	"		
1561-1	1.5	화장실	1.5	"	"		
"	목조와즙	주택	6	1561	이광우		
"	벽돌	담장	1.8×1.5	"	"		
1635-1	세면와즙	주택	6	1635	유영식의3	두산산업	
"	블럭	담장	2×3m	"	"		
1636-1	벽돌	담장	2×12m	1636	김행의		
1645-1	목조와즙	주택	18	2278	이무부	신당동 402-14	장종근
"	석계	축대	12×12m	"	"		
1645-1	슬라브	화장실	8	"	"	신당동 402-14	"
1646-1	슬라브	장독대	9	1646	변중남의7		
1648-3	목조와즙	주택	27	1648	이기수의3		
1649-1	벽돌와즙	"	1	1649	이연선의1		
1650-1	"	"	3	강남구 청담동 20-2	임규영의1		
1652-1	블럭	담장	2×8	황학동 1652	고도태		
"	철재	대문	1식	"	"		
1656	벽돌	담장	2×15	해외이주	신재병		
1724	"	"	2×8m	황학동 1724	오경자		
1728-1	블럭	"	2.5×8	1728	제행순		
"	철재	대문	1식	"	"		
1564	목조와즙	주택	9	1564	김갑용		
1565	벽돌조와즙	"	17	1565	최운식		
1566	목조와즙	"	4	1566	한천용		
"	블럭	담장	2×14m	"	"		
"	철재	대문	1식	"	"		
"	1.5	화장실	"	"	"		
1633	세면블럭	주택	3	황학동 1633	박순규		
"	블럭	담장	2×15m	"	"		
"	슬라브	차고	4.5	"	"		
1631	세면와즙	주택	5	동대문구 신설동 251-1	연옥희		
"	블럭	담장	2×6	"	"		

● 동작구공고제145호
도시계획안공람공고

1. 우리구에서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입안에 반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기간: 1991년 7월 23일~1991년 8월 6일(14일간)
 나. 공람장소: 동작구청 도시정비과
 다. 관련도서: 공람장소 비치도면과 같음
 3. 법근거: 도시계획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1991. 7. 19
 동작구청장

구분	등급	유별	폭원	연장	시 점	종 점	비 고
당초	소로	3류	6m	500m	흑석동 252-53	흑석동 67-172	* 216m는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포함 * 66m 변경없음
변경	"	2류	8m	218m	"	흑석동 76-50	

● 서초구공고제222호
도시계획안공람공고

1. 우리구 관내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입안에 따른 도시계획안을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본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공고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서초구청 도시정비과

1991. 7. 19
 서초구청장

○ 도시계획안(어린이공원)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어린이 공원	서초구 서초동 1728-7번지 일대	991.8	서울시고시 제504호 (82.12.29)
변경	"	"	991.8	대 지

정 정 개 제

1. 토목 30500-805(91.6.11)호와 판권입니다.

2. 위 대호와 판권하여 시보 제1570(91.6.15)호에 중로구고시 제8호로 게재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게재 중 일부가 오기 게재되어

3. 통 사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개제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게재된 내용 권농동 133~복익동 37-1	정정개제 요청내용 권농동 113~복익동 37-1
----------------------------	-------------------------------

사 령

기능직 공무원 신규임용 취소

●1991년 7월 15일자 영 제265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마 인 완	질병으로 인하여 1991년 7월 15일자 신규임용발령을 동일자로 취소함	총 무 과	지방통신사보 (기능직 10등급)

기능직 공무원 특별임용

●1991년 7월 18일자 영 제266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박 준 제	지방사무보조원(조부)시보 10등급 10등급 4호봉 시정개발담당관		신 규
김 순 덕	지방사무보조원(조부)시보 10등급 10등급 6호봉 시 단 파		

5급 공무원 파견해제

●1991년 7월 20일자 영 제264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김 영 준	국무총리 제4행정조정실 파견근무를 해제함	내 무 국	지방행정사무관

지방5급 공무원 의원면직

●1991년 7월 20일자 영 제265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김 영 준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내 무 국	지방행정사무관

기능직 공무원 면직

●1991년 7월 23일자 영 제267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이 천 희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총 무 과	지방운전원(기능직 10등급)

8급기술직 공무원 진출

●1991년 7월 25일자 영 제268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송 상 희	경기도 진출을 명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전기기관

6급기술직 공무원 전보						
●1991년 7월 23일자					영 제269호	
성 명	발령사함			원부서	직 급	
최합길	내무국			지하철건설본부	지방토목기사	
'91 국비 잡기 해외훈련자 파견명령						
소 속	직 급	성 명	훈련분야	훈련기관 및 기간	파견기간	
내무국	지방 서기관	임재오	도시행정	미국 위스콘신대 (91. 8.20~93. 5.16)	91. 7.21~93. 5.31	
'91 시비 잡기 해외훈련자 파견명령						
소 속	직 급	성 명	훈련기관 및 기간	훈련분야	파견기간	
내무국	지방행정 사무관	유경기	미국 위스콘신대 (91. 8.19~93. 5.16)	미 국 제정경제	91. 8. 4~93. 6. 1	